

ACI Monthly Newsletter

February 2024

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I. In-depth Topic

보도자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2.13]

- '24.7.3일 시행을 앞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 입법 예고
 - ✓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
- 정부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운영 예정으로, 정기적인 실무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질의사항을 검토할 계획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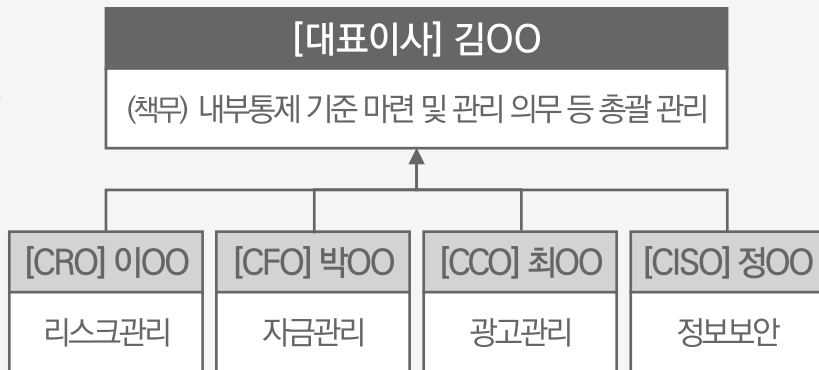
- 대표이사 등은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 금융당국에 제출
-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 ① 책무체계도와 ② 책무기술서 작성

책무구조도(예시)

① 책무체계도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도표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명 등 필수



② 책무기술서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



- 소관부서
- 겸직 여부·내용
- 주관회의체
- 유관법령
- 소관 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 책무의 상세 내용

- 개별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과 효과적 집행·운영,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지속 점검 등 관리의무 수행

✔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닐 것**

✔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 일치**

✔ **책무체계도는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되도록 도식화**

✔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할 것**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차등화

- 금융업권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 차등 규정

제출시기	대상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25년2월)	•은행 전체, 지주 전체
법 시행 후 1년 전까지 (~25년7월)	•금투(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종합금융회사) •보험(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 시행 후 2년 전까지 (~26년7월)	•그 외 금투 및 보험 •여전(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천억 이상)
법 시행 후 3년 전까지 (~27년7월)	•그 외 여전 및 그 외 저축은행

내부통제위원회 업무 중 감사(위험관리)위원회 담당 가능 업무

-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 업무 중 ②, ③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내부통제위원회 업무	주요 내용
① 심의·의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 조치 점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임원·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관리조치 점검·평가
③ 개선 조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 조치 요구

01 금융업 내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한 책무구조도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

- 금융업권별 특성 및 규제 등을 고려한 임원별 책무 파악 및 회사의 내규와 Gap 분석
- 임원의 책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관 부서장 등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보고라인 정비
- 책무구조 관련 정책 및 절차 수립, 운영/관리 방안 설계
- 책무구조 운영시스템 등 책무구조도 관련 IT 지원 체계 마련
- 감독당국의 피드백, 내부감사 검토 의견 등에 따른 보완 필요사항의 지속적 업데이트
- 전사 교육 및 인식 개선

02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 책임 소재 정비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와의 관계, 책임 범위와 역할 등 정비
- 이사회 관련 내규 등의 전반적 개정 및 대표이사 책임 등의 변경 대응



문철호 | RC부문 전무

E. cmoon@kr.kpmg.com
T. 02.2112.7741

보도자료

02_24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한국거래소, 2024.2.16]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 사전 예고한 중점점검사항 총15개(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
 - ✓ 특히, 세부원칙 관련하여 ①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내용 충실도), ②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③ 미준수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해야 함 (설명 충실도)

01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보고서 작성

- 중점점검은 ‘공시서식에 맞게 작성하도록 개도’하는 취지이므로 배포된 가이드라인의 공시서식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기재누락이나 기재오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 요구

02 중점점검 이후 피드백에 대응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관련 내용은 '24년부터 모두 Database로 구축되며, 이후 시장 수요를 고려해 공개될 예정
 - ✓ 국내외 ESG 평가기관으로부터의 보고서 내용 검증이 예상되므로, 기업은 공시 내용과 관련된 근거자료 확보 필요
 - ✓ 감사(위원) 활동에 대한 정보는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기에 유의



이민형 | ACI 이사

E. minhyunglee@kr.kpmg.com
T. 02.2112.7854

24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15개 항목)

핵심지표

01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02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03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04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05	•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06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07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08	•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지표

09	•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사항
10	•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 관련 사항
11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사항
12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사항
13	•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사항
14	• 임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15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 관련사항

source: [한국거래소]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4.02.16)

II. Law & Regulation

보도자료

01_건설 등 수주산업의 결산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4.1.29]

-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의 확인 및 반영
-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 유의
- 선급금(미진행), 착오·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게 유의
- 우발부채 공시 및 총당부채 인식여부를 면밀히 검토
-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

보도자료

02_「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2024.1.30]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도 강화
-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쏠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
-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도자료

03_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2024.1.30]

-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
-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서 익명신고 방식 도입

보도자료

04_「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2024.2.6]

- 합병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와,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의 공시를 의무화
- 외부평가기관이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평가제도 개선
- 자율적 교섭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보도자료

카드뉴스

05_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금융감독원, 2024.2.20]

- 재무공시 점검사항 12개 항목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5개)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2개) 및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5개)로 구성됨
- 비재무공시 관련,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합병등의 사후정보 및 합병 등의 사후정보를 중점 점검함

보도자료

06_「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2024.2.21]

-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24.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 상향*
 - ✓ ('24.6.30일까지)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III. Expert Reports

영상 보기

2024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배구조 이슈



-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
- 기업가치나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임원 선임 방지 정책
-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 CEO 승계 정책

#기업지배구조_보고서_활용 #배당 #분할합병 #의결권 #CEO_승계

KPMG Reports

* 보고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0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운영 경과와 3차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요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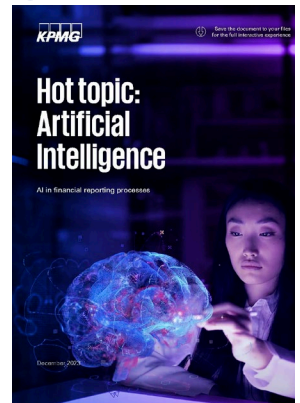
24th KPMG 글로벌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

03



9대 이슈로 살펴본 2024 세계경제포럼 (WEF)

04



Hot Topic: Artificial Intelligence

IV. Event

행사 링크

[상장협] '23년도 사업보고서 XBRL 재무공시 원데이 코칭

- 주제: '23년도 사업보고서 XBRL 재무공시에 대한 현장 코칭 및 질의응답
- 일시: 2024. 3. 7(목), 13:30 ~ 16:30
- 장소: 상장회사회관 2층 제1강의실(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
- 문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Tel : 02-2087-7201)



Ch 삼성KPMG ACI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로 삼성KPMG ACI를 친구로 추가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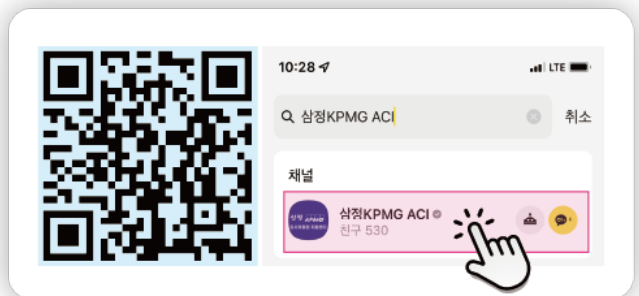
채팅방 하단 메뉴 중 'Q&A'버튼을 통해 문의사항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삼성KPMG ACI의 뉴스레터, 발간물, 영상 등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삼성KPMG ACI'를 검색 해보세요!



Contact us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김민규
전무이사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이민형
이사
T. 02-2112-7854
E. minhyungle@kr.kpmg.com

민경석
책임연구원
T. 02-2112-4292
E. kyeongseokmin@kr.kpmg.com

박수진
연구위원
T. 02-2112-7728
E. spark153@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